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 외 운영 근거 신설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01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개표소를 관할구역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관할구역에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합리적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6조)하고,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8조제7항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호)
- 나.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선거일 전 2일로 함(안 제45조제1항).
- 다.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시설 등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 라.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법의 규정들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1. 선거관리경비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규정 신설

개정안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경비를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공공단체는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④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을

부담하고, 국가는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와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¹⁾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경우 이를 선거일 전 일정기간 이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경비는 각급(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은 역할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은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함.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위탁단체 부담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이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²⁾에 위반된다는 국회의 반복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1) **법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그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 ⑤ 관할위원회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를 제4항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출한 선거관리경비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가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은 제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반 관련 국회 시정요구 》

구 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3 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2021 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19 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 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2018 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2016 회계연도 결산	- ‘특별정려금’ 용어를 순화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에 개정안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경비를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위탁선거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던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2)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예산총계주의 예외 적용을 명시하는 입법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재정 통제를 위한 원칙인 예산총계주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5년 8월 동법 개정을 통해 위탁선거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의무 규정이 마련되어,³⁾ 이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하더라도 국회의 지출 내역 심사를 통해 위탁선거경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 개선 요구가 있었던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입법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사례가 존재함.

3) 법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관련 입법례 》

구 분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2. 현행법의 규정 정비

개정안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시키고,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일에서 선거일 전 2일로 변경하는 한편, 개표소를 위탁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u>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u>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 ----- -----. ----- 1. (현행과 같음) 2. <u>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u> ----- ----- -----
제4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제4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 ----- ----- ----- ----- 전 2일----- -----.

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 <u>관할구역</u>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 개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섬 또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① ----- ----- <u>관할구역(해당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u>-----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투표참관인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반면 개표참관인은 선거일 1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며, 개표소는 해당 관할구역 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구 분	「공직선거법」 규정
문자메시지 유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u>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로 전송하는 행위
개표참관	제181조(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u>선거일 전 2일까지</u>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표소 설치	제173조(개표소)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u>당해 관할구역(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u>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이나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개표소 설치범위 등과 같이 선거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동법과 「공직선거법」에 상이하게 규정되는 경우 법률 적용의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 참여자들의 규정 숙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법의 관련 규정들을 「공직선거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률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위탁선거 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